

#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50BL 미래도 파밀리에 공급계약 체결의사 확인 안내문

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50BL 미래도 파밀리에 사전계약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.

‘사전청약제도’는 본 청약 이전 투기수요 유입을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써, 본 청약일 도래에 따라 “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50BL 미래도 파밀리에” 사전계약자 대상으로 본 청약 공급계약체결 의사 확인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반드시 기한내 방문하시어 공급계약 체결 동의 또는 거부 의사 표명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■ 공급계약 체결 의사 확인

구분	세부사항	비고
① 계약이행확약서	본 청약 시 공급계약 체결	건본주택 관람기간 내방 접수 (주소 :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86-2)
② 지위포기각서	본 청약 전 사전당첨 지위 포기	

※ 상기 공급계약 체결의사 확인 절차에 따라 아래 접수기간내 어떠한 의사표명도 없을 시 사전당첨자 지위와 공급계약을 거절 한 것으로 간주하며,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 할 예정입니다.

※ 계약이행 확인서를 작성한 고객님의께서는 본 청약접수 및 동·호수 추첨 후 안내 일정에 따라 공급계약체결 예정입니다.

## ■ 일정 안내

구분	세부사항	비고
건본주택 관람 및 공급계약 체결 의사 확인	<b>2024.11.01.(금) ~11.06.(수) 6일간</b> (운영시간 : 10:00 ~ 17:00)	사전계약자 건본주택 관람 가능

※ 건본주택 관람 및 내방접수 기간 중 84B, 99타입 전시세대의 관람이 가능하며, 사전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관람 기간으로 타입별 마감재 및 선택 품목, 세부 설계 사항 등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※ 상기 건본주택 관람 및 공급계약 체결 의사 확인 일정 변경시 재 통지 할 예정입니다.

※ 건본주택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■ 구비서류 안내

구분	구비서류	비고
본인/대리인 방문 (필수 구비서류)	① 사전공급계약서 원본 1부 ② 계약자 신분증 ③ 계약이행확약서 또는 지위포기각서 1부(건본주택 비치) ④ 인감증명서(인감도장 포함)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1부 ⑤ <b>당첨사실 확인서</b> (※ 발급경로 : 청약홈 > 청약소통방 > APT당첨사실 조회)	인감증명서/본인서명사실확인서 (본인발급용, 1개월이내 발급분)
대리인 방문 (추가 구비서류)	상기 구비서류 외 ①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 신분증(사전계약자, 대리인) ③ 위임장 1부(당사 건본주택 비치) ④ 인감증명서(인감도장 포함)	인감증명서 (본인발급용, 1개월이내 발급분)

※ 내방 접수기간 중 가족관계(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)에 한해서 대리인 접수가 가능합니다.

■ 입주예정일 : 2025년 09월 예정(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)

■ 유의사항

- ① 사전계약자는 공급계약체결 의사표현을 상기 접수기간 [2024.11.06.(수) 까지 구비서류와 함께 내방접수 하셔야 합니다. 접수기간내에 사전계약자가 공급계약체결 의사표현(‘ 계약이행확약 ’ 또는 ‘ 지위포기 ’)을 하지 않을 경우 사전계약 권리를 포기로 간주 되며, 당사에서 우편물을 통한 사전계약자의 계약해지를 통지 할 예정이며, 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.
  - ② 공급계약 체결의사를 확약한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, 특별공급 횟수 제한,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및 향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내 1순위 청약신청 제한 등 본 청약 당첨자와 동일한 각종 청약 제한을 적용 받게 됩니다. (계약이행확약서 제출 이후 실제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)
  - ③ 사전청약 확약 후 전산상 명단 확정 처리가 될 경우 지위포기는 불가능하며, 유의사항 ②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확약하시기 바랍니다.
  - ④ 상기 관람일정은 사전계약자의 계약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일정으로 방문 시 사전계약서 원본과 계약자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셔야 견본주택 출입이 가능합니다.
  - ⑤ 2024. 09. 30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사항 요약
    - 사전청약 당첨 시 사용하여 상실되었던 청약통장의 효력이 '24.10.1.기준으로 일괄 복원 예정이며, 복원된 청약통장의 효력은 본 청약(공급계약체결의사)에 참여하여 입주자로 확정 당첨되는 시점에 다시 상실됩니다. (본 청약(공급계약체결의사)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상실되지 않음)
    -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상실하여 본 청약(공급계약체결의사)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    -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본 청약(공급계약체결의사)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청약(공급계약체결의사)에 참여하여 입주자로 확정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최대 1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 (본인 - 청약통장 미복원, 세대원 - 청약통장 복원)
- ※ 청약 홈을 통해 자세한 안내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 
 청약 홈(<https://www.applyhome.co.kr>) > 청약소통방 > 공지사항

■ 견본주택 주소 :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86-2

■ 문의사항 : 1555-4100

(주)모아종합건설 (직인생략)  
 신동아건설(주) (직인생략)